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087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2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3층 동남쪽 40.18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,240,000원과 2024. 6. 30.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8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금진

별지